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2021. 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차 례

I. 인권교육의 개요	1
II. 인권교육기관 지정·역할	2
III. 인권교육 실시	3
[붙임] 노인인권교육 신청서	8
[참고1] 관련 법령	9
[참고2] 집합교육 방역관련 운영가이드	10
[참고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	10

I.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3.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5. 인권교육실적 제출

- **제출대상** : 2020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 시·군·구(시설 담당부서)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II.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역할

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3호에 따라 당연 지정됨
-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지정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할

구분	역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사이버 교육(인터넷 교육) 운영

III. 인권교육 실시

1.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중 선택하여 연 1회 이수 필요

2. 교육운영 방법

1) (집합교육)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지역교육)

- 교육일정 : 연간 총 16회(6개 권역별* 진행)

*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기수	권역	교육명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정원	
6기	부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	07.23.(금)	13:00~18:00	30명	
11기			09.08.(수)		30명	
13기			09.24.(금)		30명	
7기	대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교육센터	07.30.(금)		30명	
14기			10.01.(금)		30명	
8기	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인교육센터	07.30.(금)		30명	
16기			10.29.(금)		30명	
9기	광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08.06.(금)		30명	
15기			10.15.(금)		30명	
10기	대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전교육센터	08.13.(금)			30명
12기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09.17.(금)			30명

- 신청방법 : 요청기관(협회 및 시설 등) 담당자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일괄 신청(기관당 최대 10명)*

* 교육 시작일 3주 전부터 접수 가능, 교육 시작일 1주 전까지 기준인원(20명) 미달 시 폐강

-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정보포털(edu.kohi.or.kr) 접속
- ② 게시판 [교육소식] → [공지사항] (로그인 필요 없음)
- ③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검색
- ④ 지역교육 일정 확인 후 참여 원하는 일정 선정하여 담당자와 유선 확인 (교육 참여 희망 일정, 참석자 가능 인원 확인)
- ⑤ 유선 일정 확인 후 첨부파일 열기 → 노인인권교육 신청서 작성 등 일정 협의
- ⑥ 수료증 출력 (교육 참석 2~3주 후 신청 시 제출한 메일주소로 수료증 송부)

2) (집합교육)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방문교육)

※ 방문교육의 경우, 교육 요청기관은 교육 시 필요한 강의장, 빔프로젝트, 컴퓨터 등 교육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함

- 교육일정 : 연간 총 24회(요청기관 협의 후 교육일정 확정)
- 신청방법 : 요청기관(협회 및 시설 등) 담당자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일괄 신청(최소 20명 이상)

-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정보포털(edu.kohi.or.kr) 접속
- ② 게시판 [교육소식] → [공지사항] (로그인 필요 없음)
- ③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검색
- ④ 교육 담당자와 유선 확인 (교육 희망 일정, 장소 등 확인)
- ⑤ 유선 일정 확인 후 첨부파일 열기 → 노인인권교육 신청서 작성 등 일정 협의

※ 세부절차 및 업무분담

• 세부절차

요청 기관

수요파악 후 개발원과 유선으로 교육협의
협의 후 교육 신청서, 교육생 명단 발송 (공문), 강의장 확보 등

인력개발원

교육개설 검토 및 통보, 강사섭외 교육 운영, 수료통보

• 업무분담

요청 기관

현장수요파악 및 교육요청, 교육생모집, 강의장 확보, 교육운영지원

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설계 및 강사섭외 등 교육기획 및 운영

* 교육 운영 시 교육 요청기관 담당자 2인 이상 배정으로 교육운영지원 반드시 필요

- ⑥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3주 후 신청 시 제출한 메일주소로 수료증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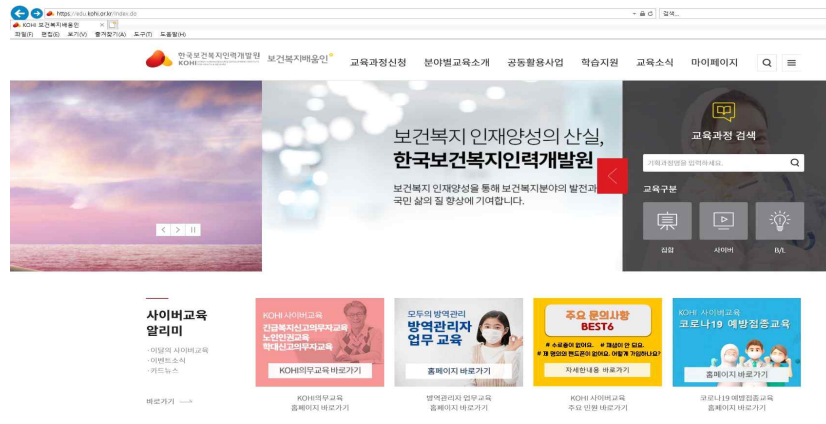
※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인터넷 교육

○ 교육일정 : 상시

○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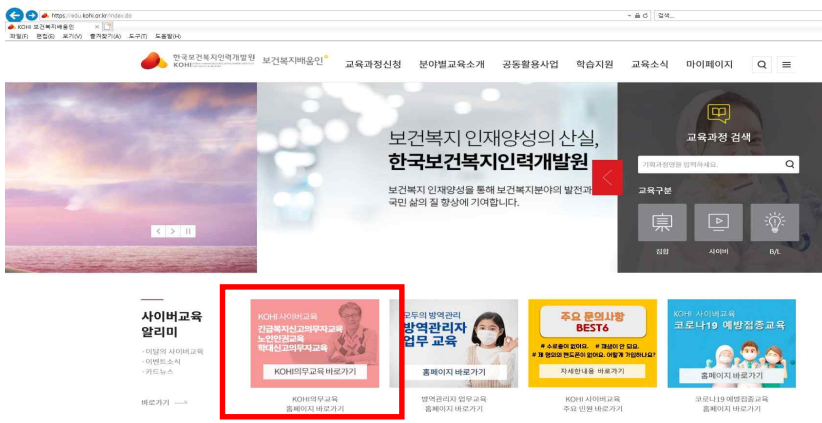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edu.kohi.or.kr)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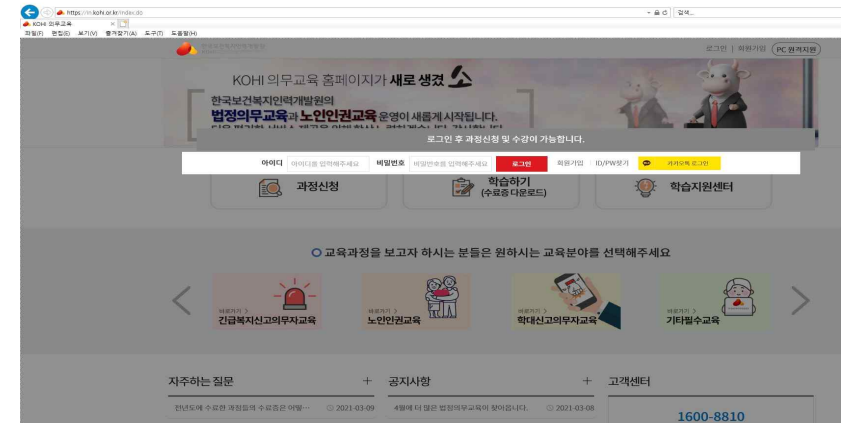
② 회원가입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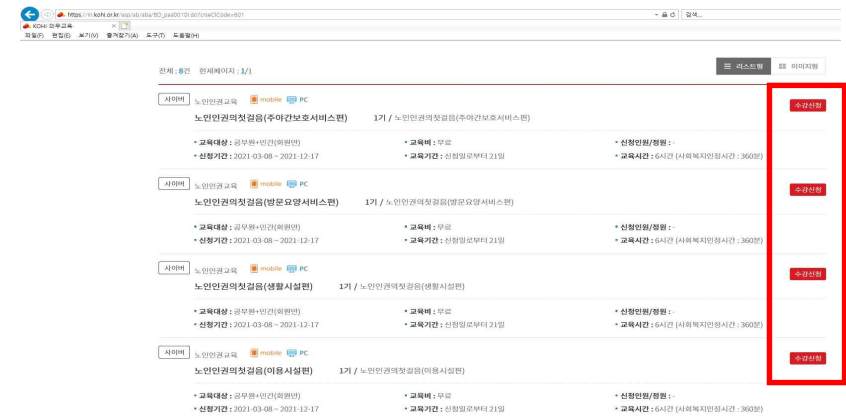
③ 교육정보포털(edu.kohi.or.kr) → KOHI 의무교육바로가기 클릭(in.kohi.or.kr)



④ 로그인 실시



⑤ [노인인권교육] 버튼 클릭 → 희망 교과목 수강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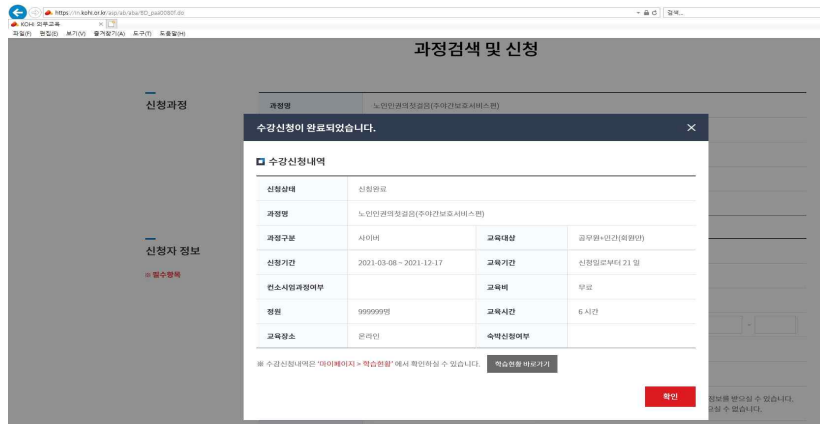
※ 교육과정(4개)

-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 3)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 4)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 4) 주야간보호서비스편, 방문요양서비스편

⑥ 과정 및 개인 기본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진행(하단 완료창 참고)



⑦ [학습하기(수료증다운로드)] 클릭 -[학습하기] 클릭



⑧ 수료증 출력 (교육생 본인이 [교육정보포털\(edu.kohi.or.kr\)](http://edu.kohi.or.kr) → KOHI 의무교육바로그기
클릭(in.kohi.or.kr) → [학습하기(수료증다운로드)] 클릭 → 수료증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 해당 교육안내문은 관련 법령, 제도 및 교육기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고

※ 인권교육 담당부서

- 집합교육(지역교육, 방문교육) 사회서비스교육부 (043-710-9044)
- 인터넷교육 : 스마트교육부 (1600-8810)

붙임 노인인권교육 신청서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노인 인권 교육 신청서			
① 신청 기관명			
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③ 소 재 지			
④ 시설장 성명		⑤ 신청인 성명	
⑥ 교육신청인원		⑦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 (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교육 운영 관련(교육생 확인)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및 파기하겠습니다.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권교육 수강이 불가능 할 수 있 습니다.			
위 개인정보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귀중			
첨부서류 -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 1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1 관련 법령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 집합교육(지역교육/방문교육) 방역관련 운영 가이드

- 일정수준 환기할 수 있고, 일정수준 거리두기(2m, 최소1m 이상)가 가능한 중·대규모 장소에서 교육 실시(예: 대강당, 체육관 등)
- 옆자리, 앞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 형태의 자리 배치 혹은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단체 식사 혹은 다과 제공 금지
- 쉬는 시간 다중 이용공간(로비, 휴게장소 등)에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강사 등 종사자는 강의 및 응대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인적사항 기재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상황에 따라 교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이 감염증이 의심되는 교육생의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하오니 교육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교육 취소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 일상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감시 대상자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후 발열(37℃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자

- 교육에 참석하시는 교육생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시 교육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